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홍정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5807

발의연월일: 2022. 6. 3.

발 의 자:홍정민·강득구·김정호

이원택 • 민형배 • 신정훈

유정주 • 전용기 • 오영환

설 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있고, 그 밖의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행위 등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국내외 기업 간 경쟁 심화로 산업기술의 국내외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고, 특히 반도체,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민·군 겸용으로 활용됨에 따라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국가경제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어 위반행위가 엄중함에 비해 입증요건이 과도함.

이에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및 침해행위의 입증요 건을 완화하고, 공소시효를 연장함으로써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제6호·제6호의2 및 제36조제1항·제2항, 제37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6호 및 제6호의2 중 "사용되게 할 목적으로"를 각각 "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"로 한다.

제36조제1항 전단 중 "사용되게 할 목적으로"를 "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사용되게 할 목적으로"를 "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"로 한다.

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7조의2(공소시효에 관한 특례)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「형사소송법」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5년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	제14조(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
행위 금지) 누구든지 다음 각	행위 금지)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	
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	6
용하거나 <u>사용되게 할 목적</u>	사용될 것임을 알면
<u>으로</u>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	<u>서도</u>
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	
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	
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.	
합병등을 하는 행위	
6의2.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	6의2
사용하거나 <u>사용되게 할 목</u>	<u>사용될 것임을</u>
<u>적으로</u> 제11조의2제5항 및	<u>알면서도</u>
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	
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	
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	
하고서 해외인수·합병등을	
하는 행위	
6의3. ~ 8. (생 략)	6의3. ~ 8. (현행과 같음)
제36조(벌칙) ① 국가핵심기술을	제36조(벌칙) ①
외국에서 사용하거나 <u>사용되게</u>	사용될

할 목적으로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 이 경우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.

②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<u>사용되게 할 목적으로</u>제14조 각 호(제4호를 제외한다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행위를 한 자(제1항에 해당하는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)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③ ~ ⑧ (생 략) <신 설>

<u> 것임을 알면서도</u>
·
<u>.</u>
②
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-
③ ~ ⑧ (현행과 같음)
제37조의2(공소시효에 관한 특례)
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죄에
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「형
사소송법」 제249조제1항에도
불구하고 15년으로 한다.